2025 아트코리이랩 대학연계 아트&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대학(원)을 중심으로 아트&테크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술 분야 대학창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<2025 아트코리아랩 대학연계 아트&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> 사업을 진행합니다. 예술 분야 특화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학(원)의 많은 관심과 참여 비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- ㅇ (공모명) 2025 아트코리아랩 대학연계 아트&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
- o (공모목적) 대학(원) 내 우수한 아트앤테크 창업 아이디어 발굴, 교육, 사업화를 지원하여 예술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
- **(공모기간)** 공고일 ~ 2025. 4. 3.(목) 14:00까지
- (사업기간) '25년 4월 ~ 11월(8개월)
- o (사업내용) 국내 대학(원) 內 우수한 융합 아이디어의 발굴, 교육, 창업을 돕는 중기 지원체계 마련

일반형
후속형

아트&테크 창업	창업교육 지원	아이디어 구현 (사업화) 지원			성과 공유		
프로젝트 발굴 (대학별 5개 팀 내외)	(비교과)	· 창업 프로젝트 지 · 멘토링, 시제품 지 · 아트랩 공간·장비	 세작		· 미니 피칭 및 시상식 · 쇼룸 및 시연장 대관 지원		
아트&테크 창업팀	건그 그리 내	창업 지원	판로 개척		후속 지원		
발굴 (대학별 3개 팀 내외)	정규 교과 내 창업교육 편성	.예술장업 맞춤 컨설팅 . 아트랩 공간장비지원	· 시업 고도화지원 · 박람회, 마켓 등 참가 지원		· 공유오피스 입주 · 장기입주 지원 시 가산점		

○ (지원대상)

- [일반형] 예술 분야 창업교육 및 사업화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이 가능한 대학(원) 혹은 주관기관이 대학(원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*
 - * '23년 대학 예술창업 활성화 지원, '24년 대학연계 아트&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 2년 연속 선정기관 지원 불가
- [후속형] '23년 대학 예술창업 활성화 지원 또는 '24년 대학연계 아트&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에 참여했던 대학(원) 혹은 컨소시엄만 지원 가능

· 컨소시엄 성립

- 대학(원)+기업 / 대학(원)+지역진흥원 / 대학(원)+연구기관 / 대학(원)+기업+연구기관 등
- * 지원신청 시 동일 대학(원)으로 복수 신청 가능 (*단, 참여 인력(기관, 교수 등)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)
- · 컨소시엄 불가 : 대학(원)+위탁용역 기관

- ※ 컨소시엄으로 지원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(원) 등 학교가 주관기관으로 필수 참여
- ※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의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
- ※ 컨소시엄 형태로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지원금은 할당 불가(연구기관 등으로는 할당 가능)
- o (지원규모) 총 4억원 內 5건 내외 지원
 - [일반형] 3건 내외, 기관당 최대 8천만 원
 - [후속형] 2건 내외, 기관당 최대 8천만 원
 - ※ 지원기관 수 및 지원액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지원금은 2회 분할 교부하며 중간평가 이후 2차 교부 진행
 - ※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혜 불가
 - ※ 그 외 지자체, 문화재단, 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
- o (우대사항) 비수도권 지역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소재 대학의 경우 가산점 부여
 - *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의에서 2점을 가산하며, 발표심의에는 별도의 가산점 없음 (통합심사로 진행되는 경우, 최종 점수에 1점을 가산함)
- (지원내용) 대학(원) 구성원 대상 유형별 창업 단계에 따른 아트&테크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

[참고 1] 유형별 지원내용 개요

사업명	공통					창업 기반 마련			사업 고도화				
	선정 및 교육	창제작 인프라	시제품 제작비	성과 관리	성과 공유	포상금	프로젝트 발굴	멘토링	네트 워킹	정규 교육	비즈 컨설팅	판로 개척	투자 유치
일반형	•	•	•	•	•	•	•	•	•				
후속형	•	•	•	•	•	•				•	•	•	•

[참고 2] 유형별 상세 내용

구분		내용							
		[일반형]	[후속형]						
지원내용		예술창업 교육 및 아이디어 발굴,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멘토링 운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, 네트워킹 기획 및 운영 등 사례비 행사부대비용	예술창업 관련 정규교과 편성 창업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및 비즈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, 박람화마켓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 사례비 행사부대비용						
* 상세 항목은 공모신청서 참조		• 전문가 활용비 • 홍보마케팅비 • 도서인쇄비	전문가 활용비 홍보마케팅비 도서인쇄비 국외여비						
사업 수행 내용	① 창업팀 선발	지원대상 선발 및 모집 아트&테크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교내 대학(원)생 개인(팀) 기관당 5개 이상 개인(팀) 지원, 팀당 제작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지원 모집공고 및 홍보, 선정·평가(모집/접수 페이지 운영, 지원신청서 제작 및 취합 정리, 심사 운영 등)	지원대상 선발 및 모집 아트&테크 분야 예비 또는 초기창업 단계의 대학(원)생 개인(팀) [*] * '23-'24년 지원사업 참여팀 우선 선발 필수 <u>기관당 3개 이상 개인(팀) 지원</u> 모집공고 및 홍보, 선정·평가(모집/접수 페이지 운영, 지원신청서 제작 및 취합 정리, 심사 운영 등)						

o 아트앤테크 분야 특화, 창업교육 ㅇ 아트앤테크 분야 특화, 창업교육 정규 커리큘럼 및 멘토링 기획 및 운영 교과 운영 - 아트앤테크 분야 창업에 특화된 공통 - 사업 기간 내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및 1:1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구성된 정규교과 운영 * 사업 기간 내 기편성 또는 신설된 정규교과 모두 - 교육전문가 섭외 및 교육과정* 현장 운영 가능하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실습비, 재료비, 특강비 * 최소 8주 과정(32시간 이상) 교육 커리큘럼으로 등 사용 가능(전임교원 보수 지급 불가) 예술 분야 창업 특화가 드러나야 함 ㅇ 기관별 예술 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- 아이디어 구현(프로토타입 제작)을 위한 기획 및 운영 창업·기술 멘토링 * 팀별 최소 8회의 1:1 멘토링 (예) 사업고도화를 위한 창업·기술 교육, 2 - BM 개발 및 사업계획서 작성·구체화 지원 사업화 멘토링, 사업화 자금 확보 등을 위한 o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, 마켓 등 정부·민간지원사업 및 투자 유치 지원 등 지원 참가 지원 * 국외여비 사용 불가 o 국내·외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, 마켓 등 참가 지원 등 o 창업 아이디어 실험 및 구현을 위한 창작 공간·시설·장비 지원 ㅇ 제작지원금 집행 및 관리 제반 업무수행 - 팀에게 제작지원금* 직접 지급 불가, 운영기관이 팀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집행 - 계획 대비 진행 진척도 파악(예산집행 비율 등), 집행 증빙 서류 관리 제반 업무 수행 * 제작지원금은 일상적인 운영 경비(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생활비, 사업진행비, 출장비, 공과금, 전화요금 등), 자산성 물품 구입비(노트북, 카메라, 사무용품 및 집기, 전화·인터넷 설비 등),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o 팀별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(목표 달성률/결과물 조사 포함) - 월간보고서 등 팀별 진행 현황 관리 ㅇ 성과발표회 운영 및 우수팀 선정 - 팀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취합, 결과물 전시 및 발표 등 성과발표회 운영 - 우수팀 선정 및 상금 지급(* 예산계획에 따라 지급) (3) - 우수팀 아트코리아랩 통합 결과공유행사* 피칭 및 시연 지원 성과 * <대학별 성괴발표회>를 통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개인(팀)은 아트코리아랩 통합 결과공유행사에서 피칭 기회 제공. 우수팀을 포함한 결과물은 통합 결과공유행사 기간 내 아트코리아랩에서 전시 예정 관리 * [일반형]의 경우, 통합 결과공유행사에서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 시 아트코리아랩 쇼룸시연장 내 후속 전시·쇼케이스 후속 지원(진행 시기 협의) * [후속형]의 경우, 통합 결과공유행사에서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 시 공유 오피스 단기 입주(26년 상반기) 등 후속 지원 예정 o 아카이빙 콘텐츠(영상 또는 출판물) 제작 - 교육 프로그램 스케치 영상, 사업 아이템 제작과정 인터뷰, 결과물 아카이빙북 등 o 지원사업 참여자 및 사업관리 일체 - 네트워킹 프로그램(* 교내 창업팀 간, 지원사업 참여 학교 간 네트워킹 운영 등), 중간평가 기획 **(4)** 및 운영, 진행 상황 수시 및 월간 보고 사업 o 지원사업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관리 - 전체 지원사업 과정 및 성과, 교육/멘토링 과정 및 창업팀 소개, 만족도 조사 등 - 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(* 수혜자, 멘토 등 다각도 FGI를 통한 심화 분석 포함)

- (지원항목) '대학연계 아트&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'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
 - ※ 아트코리아랩 內 인프라(시연 및 제품 제작 공간, 전문 장비) 지원 가능

○ (지원불가항목)

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, 공과금, 전화 요금 등 기관 운영 경비
- 자산취득비, 시설 부대비, 수선비, 전화·인터넷 설비, 홈페이지 개발비, 도메인비 등 기관 운영 목적 비용
-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,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

○ (선정기관 의무사항)

- 선정기관 대상 사전워크숍, 간담회 및 과정공유회 참석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무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제출
-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시,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I, 아트코리아랩 BI 등 지원사업 관련 기관 표기 필수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 - 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 - 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
-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필수, 정산·실적 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
□ 신청 및 접수

- **(접수기간)** 공고일 ~ 2025. 4. 3.(목) 14:00까지
 - * 접수 마감일(25. 4. 3.(목) 14:00)까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4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
- (신청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 (*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)
- (제출서류 및 방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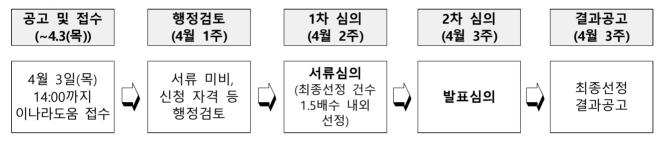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1	[필수] 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	이나라도움 시스템에 <u>직접 작성</u>
2	[필수] 지원신청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
3	[필수] 기관 증빙 서류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) 1부	이나라도움 시스템에 <u>첨부 제출</u>
4	[선택] (해당시) 공동 수행 확약서 1부	

○ (주의사항)

- 이나라도움 이용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-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(시스템 사용, 장애 신고 등)은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문의
-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권장

□ 심의 및 평가

- o (심의방법) 심의위원 심의를 통한 선정
- (선정절차)

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(심의기준)

평가항목	평가지표	내용	배점	
	기관 전문성	· 유사 사업 경험(내용/수준 등) 등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역량 보유 여부		
[1]	수행관리체계	·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		
수행 역량	참여인력 확보 및 전문성	· 예비창업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전문가그룹과 사업관리 참여 인력 확보 여부 및 전문가그룹 역량의 우수성		
	인프라 확보	·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, 장비 등 인프라 확보 여부		
	사업 이해도	·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		
[2]	사업 차별성 · 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전반 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			
사업	사업 적정성	· 세부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	50	
수행	사업 구체성	·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	
	사업비 규모 및 편성	·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		
[3] 기대	성과관리 및 후속지원	·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기간 중/종료 후 투자/피칭 지원, 행사 참여 지원 등 지원 방안 마련 여부	20	
성과	기대효과	·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 및 결과물의 기대효과		

^{*} 동점자 발생 시,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

ㅇ (결과발표) 4월 3주 내,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공지

□ 지원 제외 대상

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

-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 되는 경우
 - ※ 제13조 제4항
 - 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 - 2.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- 문화체육관광부의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을 체납 중인 경우
-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-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*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
- ※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신청서 내 지원사업 확약서에서 확인 필수

□ 유의사항

o (예산편성 단계)

- 과세사업자의 경우,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하며 부가세액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음
- * 부가세액은 사업비 외 자부담액으로 집행하며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
- * 고유번호증/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액 보조사업비 편성/집행 가능
-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<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>

-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, 공과금, 전화 요금 등
-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(교육기기, 장비, 가구, 도서 구입 등), 시설 부대비, 수선비, 전화·인터넷 설비, 홈페이지 개발비, 도메인비 등
-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(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제 19조등

o (선정 단계)

-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(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) 및 이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신청 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의 교부, 집행, 정산의 의무는 신청단체에 있음

ㅇ (사업수행 단계)

-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, 집행,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됨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금 집행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

-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 불인정 될 수 있음
-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,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
-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- 사업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, 고의 혹은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
-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
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,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* ('21.1.6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 - *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
ㅇ (사업종료 후)

- 회계검사 및 정산·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(센터 지정양식) 제출
-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·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,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※ 신청서 제출 전에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문의

- o (공모 문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예술사업화지원TF (akl@gokams.or.kr, 02-2098-2901, 2906)
 - ※ 전화 문의는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 (점심시간 12:00-13:00)
- o (이나라도움 문의) 이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